

2015 시세 종합평가 평가기준(안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가방법	비고
5개	13개 지표	110		
① 현년도 징수실적 (60점)	① 세목별 징수율(부과금액·징수금액 기준) ◦ 부동산취득세(3점), 차량취득세(2점), 지방소득세(8점), 주민세(5점), 자동차세소유분(4점), 재산세 도시지역분(2점),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(1점) ※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, 특별징수분, 양도소득세분, 종합소득세분 각각 2점씩 반영 ※ 주민세는 균등분(2점), 재산 및 종업원분 각(1.5)	20점	◦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- 순위별 0.01~0.08점 차감하여 평가 ※ 반영비율은 취득세·지방소득세는 신고분 10%, 고지분은 90%로 산출 반영하고, 주민세, 자동차세(소유분), 재산세(도시지역분),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)는 현계징수실적 ※ 평가기간(회계연도폐쇄일)을 경과하여 징수 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	자치구 위임세목 기준
	② 세목별 징수율(부과건수·징수건수 기준) ◦ 주민세(5점), 자동차세소유분(6점), 지방소득세(6점), 기타세목(8점) ※ 제외세목 < 레저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(특별시분) 제외	20점	◦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- 순위별 0.05~0.08점 차감하여 평가 ※ 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분(10%)과 고지분(90%)으로 구분 세무종합시스템을 발취하여 평가하고, 기타세목은 현계표를 기준으로 평가	
	③ 징수율 신장세(자치구 위임 세목) < 제외세목 > 레저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(특별시분) 제외 ※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	20점	◦ 시세 현년도 최근 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 - 평가기준보다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- 순위별 0.025점 차감하여 평가	
② 목표 달성도 (20점)	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< 제외세목 > 레저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(특별시분) 제외	10점	◦ 시에서 확정 배시한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하고, 미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오차율 기준 순위별 0.1점씩 감점처리	자치구 위임세목 기준
	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< 제외세목 > 담배소비세, 자동차세(주행분), 지방소비세, 방소득세(특별징수분), 지방교육세, 지난년도 세입,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)	10점	◦ 자치구 오차율이 ±5.5이내이면 만점부여하고, 오차율이 ±5.5% 초과한 경우 기본오차율 ±5.5%을 뺀 오차율의 70%를 차감처리 ※ 최고 감점 점수는 5점으로 함	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가방법	비고
③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(10점)	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◦ 되돌려주기 실적(연간을 기준으로 10점을 반영하고,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) ※ 상·하반기 일제정리추진계획을 미시행할 경우 각 0.5점 감점 ※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% 반영하고, 평가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은 제외	10점	◦ 배점-((최고구 정리율 - 해당구 정리율) × A) A = 평가배점의 30% ÷ (최고구 정리율 - 최저구 정리율)	
④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 (10점)	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◦ 市 주관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참석(5점) ◦ 區 자체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추진(5점)	10점	◦ 市 주관 특별대책 회의 개최(연 3회) 미참석 1회당 0.3점 감점 -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구 가점(0.3점) 부여 ◦ 자체 특별대책 회의 개최(연 3회) 5점 부여하고, 미개최 1회당 0.5점 감점	
⑤ 기타사항 (10점 및 감 점)	① 세무행정 개선사항	2점	◦ 기본 1건을 제출할 경우 2점 부여하고, 세무행정 개선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될 경우 가점 0.5점 부여 ※ 세무행정 개선위원회 :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	
	①-1.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	3점	◦ 기본 1건을 제출할 경우 3점 부여하고, 세원발굴 등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될 경우 가점 0.5점 부여 ※ 세원발굴 등 평가 위원회: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	
	② 세무공무원 관리직(5급)진출 우대	0.7점	◦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1명당(가점 0.7점) ※ 가점은 1.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무관 승진은 본발령 기준	
	②-1. 6급 평주사 가점 부여	5점	◦ 자치구 전체 행정직 6급대비 평주사 비율기준 세무6급대비 평주사 비율이 가장 높은구에 가점 5점 부여(순위별 0.03점 차감)	
	③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	△ 10%	◦ 부적성 사례 등을 발굴할 경우 부적정 사례 별로 해당 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 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% 감점처리	
③-1. 기타 업무처리 등	△ 2점	◦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자치구 지원금 세입부서 예산지원 반영 여부 ※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, 워크숍, 시상금 또는 포상금,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(자산취득비, 사무환경 개선비 등 제외) ※ 지원금에 대해 일부만 반영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에서 제외		